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105조 등).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 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6조의4).
- 예산 관련 지출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 제재를 정비함(안 제108조 및 제109조).

II. 검토의견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관련(안 제105조의3)

안 제105조제14항 및 제15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임원 중 선거를 거쳐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제105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하
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
를 갖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가 설치되는 것
을 전제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인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사결
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법문만으로는 총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
으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되,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한 수정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참고로, 법무부도 저작권관리신탁업자의 총회에 관한 정의 및 절

차 규정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안 제105조의3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개 정 안	수정의견
<u><신 설></u>	<u>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u> ① <u>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u> <u>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u> <u>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u> ① <u>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u>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u>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u> ① <u>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u>----- ----- ----- -----. ----- -----.

2.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안 제106조의2)

안 제106조의2제2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안 제109조 제1항제6호의3)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42조제2항제2호의3).

이는 이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차별적 조건에 기한 저작물등 이용허락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행정제재(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의 이용허락”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i)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할 것, ii)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이라는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법문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할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II. 관계기관 의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제105조제15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 관리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제3조 제1호다목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①다목에 해당하는 의무위탁선거의 경우 위탁선거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실효성 있는 조사·조치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는 점, ②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과정에서 위탁선거법에 따른 각종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한 자율성을 제약할 여지가 있는 점, ③위탁선거의 경우 선거관리 비용을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법정사무 처리로 인해 위탁단체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때보다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경비가 증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법무부

법무부는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²⁾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중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 2) 「상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시기의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안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하여 주서에 반영하였음.

부칙(개정안)	부칙(수정의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전문위원 이 세 진)